

학년 대표자 선거시행세칙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1장 총칙

제1조 (선거의 원칙)

선거는 前대 학년 대표자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간호대학의 주인으로 세워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2조 (목적)

간호대학 학년 대표자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각 반별 학년 활동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 1) 본 세칙은 간호대학 각 반별 학년 대표자와 학년 부대표자 선거 (이하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학년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본회 회원 중 해당 단위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피선거권)

본회 회원 중 해당 단위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장 선거

제6조 (선거일)

- 1) 선거는 매 학기 말에 실시한다.
- 2) 선거일은 각 반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며, 최소 3일 전에 반 학우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자와 같다.
 - ① 간호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
 - ② 간호대학생회 집행위원
 - ③ 해당 단위 회원이 아닌 자
- 2) 제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9조 (유세)

유세는 개인유세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다.

제10조 (개인유세)

후보자의 개인별 연설회는 강의실로 국한한다.

4장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제11조 (위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반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2조 (목적)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 1)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2)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3) 세칙과 학년선관위가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시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반별 학년 대표 입후보자에게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4) 학년선관위는 선거 관련 업무 종료 후 자동 해체된다.

제14조 (구성)

- 1) 반운영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해당 단위 학우 2인 및 해당 반운영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은 반운영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단, 반운영위원회 의장이 공직 사퇴할 경우 간호대학생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3) 신입생 첫 학기 선거의 경우, 반운영위원회의 의논을 거쳐 해당 반운영위원 2인 및 반운영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5장 징계

제15조 (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학년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학년선관위가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징계의 방법)

- 1) 징계의 결정은 학년선관위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른다.
- 2)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후보자에게 징계를 통보한다.

제17조 (징계의 통보)

- 1) 경고는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해당 후보가 속한 단위에 사유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 2) 경고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경고 1회를 준다.
- 3) 경고 3회 누적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6장 투표

제18조 (통칙)

- 1) 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 2) 기권표의 기준은 학년선관위가 정하여 선거 이전에 안내한다.

제19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 1) 투표는 후보자의 개인유세 이후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표시간은 학년선관위 위원이 정한다.

제20조 (투표용지, 투표구 및 투표소)

- 1) 정규 투표용지는 학년선관위 위원이 제작한다.
- 2) 투표구 및 투표소에는 학년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제21조 (투표절차)

선거권자와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가) 투표용지 배부
- 나) 투표

7장 개표

제22조 (통칙)

- 1) 개표는 학년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 2) 표의 유, 무효표 및 특정 후보의 득표기준은 학년선관위 위원이 정한다.

제23조 (개표시간)

개표시간은 학년선관위 위원이 결정, 공고한다.

제24조 (개표장)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각 학년선관위 위원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제25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가) 투표인 수 공고
- 나) 투표함 개봉
- 다) 개표
- 라)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마) 현황판에 기재

제26조 (무효표)

- 1)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둘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경우
 - ③ 후보자 이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④ 후보자 이름 이외의 것을 기입한 경우
- 2) 이외의 경우에는 학년선관위가 논의 및 결정한다.

제27조 (효력)

- 1) 투표자 수와 투표함에서 확인된 개표 용지 수에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 2)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이다.
- 3) 전체 투표율이 75%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4)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 미만일 경우 1, 2위에 한하여 재투표를 한다.
- 5) 단선일 경우, 찬성표 수와 반대표 수의 차가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보다 적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8장 당선

제28조 (당선의 기준)

- 1)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수와 기권표수의 합보다 커야 한다.
- 3)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자의 50% 이상 찬성으로 한다.
- 4) 단독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마되었을 경우 반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임시 학년 대표자를 결정한다.

제29조 (당선공고)

-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학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 2)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은 학년선관위를 24시간 이내 소집하여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결은 학년선관위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공고를 한다.

9장 임시 학년 대표자

제30조 (업무 및 권한)

간호대학 학생회칙 제55조(업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단, 그 임무와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해당 단위 구성원의 동의 하에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 (임기)

- 1) 지정일로부터 새로운 학년 대표자 당선 확정일까지로 한다.
- 2) 새로운 학년 대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시 대표자가 17주차 말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재선거)

- 1) 새로운 학년 대표자 재선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 2) 재선거일은 각 반 학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하며, 최소 3일 전에 반 학우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 (발표)

본 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학년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개정)

- 1) 본 개정세칙은 2022년 05월 31일에 개정하여 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세칙은 2022년 10월 04일에 개정하여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세칙은 2023년 05월 16일에 개정하여 2023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세칙은 2023년 09월 14일에 개정하여 2023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신입생 학년 대표)

- 1) 신입생 첫 학기 학년 대표 선거는 4장 제14조 3항에 따라 지정된 학년선관위원 감독 하에 다음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 가) 후보자 등록
 - 나) 출마 소견 발표
 - 다) 투표용지 배부
 - 라) 투표
- 2) 임기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해당 학기 17주차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특수 상황)

간호대학 학생회칙 부칙의 제4조 (특수 상황)을 따른다.